

KT노동조합 조합원현장조직 KT전국민주동지회

140-13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80-10,동진빌딩301호 ☎(02)701-0070, 팩스(02)704-4441

문서번호: 민동회 2013-001

시행일자: 2013. 1. 29.

수 신: KT노동조합 정윤모위원장 [463-7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참 조:

제 목: KT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개정 요구



1. 관련

- 가. 공직선거법 제93조1항 위헌 판결(2011.12.29)
- 나. KT노동조합 2013년 지부대회 공고(2013.1.28)
-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4항, 제17조2항
- 라. KT본사 노사협력팀 부당노동행위 교육 녹취록(2012.4.13 원주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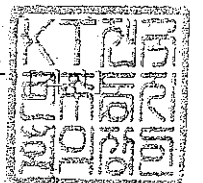
2. 선거관리규정 개정 요구 사항

가. 헌법재판소의 2011.12.29. 위헌 판결 이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으나 KT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2조3항에는 여전히 “어떠한 유인물 및 홍보물도 통신매체, 인터넷, 사내매체를 통하여 제작 배포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T노동조합 대의원선거가 치러지는 2013. 2. 5. 이전에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중앙위원회 소집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침하달)

나. 회사측의 지배개입을 차단하고 조합원들의 비밀·자유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규정에 통합투개표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1) 중앙위원장선거시 지방본부별 1개소에서 통합투개표
- 2) 지방본부위원장선거시 지방본부내 1개소에서 통합투개표
- 3) 지부장선거시 지부내 1개소에서 통합투개표. 끝.

KT노동조합 조합원현장조직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 김석균



이 우편물은 2013-01-28  
제 3116003011831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원호로우체국장

# KT노동조합 조합원현장조직 KT전국민주동지회

140-13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80-10,동진빌딩301호 ☎(02)701-0070, 팩스(02)704-4441

문서번호: 민동회 2013-002

시행일자: 2013. 1. 30.

수 신: KT노동조합 정운모위원장 [463-7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참 조:

제 목: KT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개정 2차 요구

## 1. 관 련

가. 공직선거법 제93조1항 위헌 판결(2011.12.29)

나. KT노동조합 2013년 지부대회 공고(2013.1.28)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4항, 제17조2항

라. KT본사 노사협력팀 부당노동행위 교육 녹취록(2012.4.13 원주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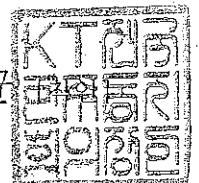
## 2. 선거관리규정 개정 요구 사항

가. 헌법재판소의 2011.12.29. 위헌 판결 이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으나 KT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2조3항에는 여전히 “어떠한 유인물 및 홍보물도 통신매체, 인터넷, 사내매체를 통하여 제작 배포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T노동조합 대의원선거가 치러지는 2013. 2. 5. 이전에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중앙위원회 소집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면 중앙선관위 지침하달)

나. 회사측의 지배개입을 차단하고 조합원들의 비밀·자유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규정에 통합투개표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1) 중앙위원장선거시 지방본부별 1개소에서 통합투개표
- 2) 지방본부위원장선거시 지방본부내 1개소에서 통합투개표
- 3) 지부장. 대의원 선거시 지부내 1개소에서 통합투개표. 끝.

KT노동조합 조합원현장조직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 김석균



이 우편물은 2013-01-30  
제 3116001000705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원효로우체국